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2년 한시정원 1명(5급 1명), 문화시설 건립 및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 음악산업 진흥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업종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관광취약계층 무장애 여행지원 전문인력 1명(6급 1명), 광역관광개발 사업 제도개선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시설 건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고, 학술 관련 국제교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2명을 학예연구사 2명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 1명을 학예연구관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5. ~ 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6”을 “681”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8”을 “603”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48”을 “1,850”로 하고, 일반직 계 “1,522”를 “1,5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69”를 “1,474”로 하고, 전문경력관 “29”를 “26”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1. 제74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2. 제74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한시정원) (생략) <u><신설></u>	제74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76</u>		<u>681</u>	+5	
	.		.		.		
	.		.		.		
일반직	계		<u>669</u>		<u>674</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8</u>		<u>603</u>	+5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848</u>	• <u>1,850</u>	+2
•	•	•	
•	•	•	
일반직 계	<u>1,522</u>	<u>1,524</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69</u>	<u>1,474</u>	+5
전문경력관	<u>29</u>	<u>26</u>	-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